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신설 2023. 10. 25.>

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:	접수일:	처리기간: 14일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
부가통행료 부과내역	기관명:	차량번호:
	고지받은 일자:	부과금액:
결과통지 방법	[] 우편 [] 전화 [] 팩스 [] 전자우편 [] 기 타	
이의제기 사유		

「유료도로법」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의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료도로관리청
유료도로관리권자 귀하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확인	→	결과통지
신청인		접수기관		접수기관		접수기관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